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처리 소홀

관계기관 향동초등학교

내 용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지침」에 따르면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가능일수는 20일(단,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또는 심각 단계 시 2021년 57일 범위내에서 가정학습 가능) 이내로 되어 있다.

그럼에도 향동초등학교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21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업무 처리 시 57일을 초과하여 출석 인정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현황

연번	학생명 (학년반)	시작일	종료일	일수	학습형태	출석인정	비고
1	○○○ (4학년 2반)	2021-05-25	2021-10-08	57	가정학습	57	
2		2021-10-12	2021-10-27	7	가정학습	7	
계				64		64	

[조치할 사항]

관련자에게 ‘주의’ 처분하오니, 향동초등학교장은 앞으로 관련 업무 처리 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부적절

관계기관 향동초등학교

내 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하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향동초등학교에서는 2021학년도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를 입후보자 등록기간 이후에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며, 입후보자 등록기간 이후에 학부모 3명을 입후보자 등록 후 무투표 당선을 공고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관련자에게 ‘주의’ 처분하오니, 향동초등학교장은 앞으로 관련 업무 처리 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